조 정 신 청 서

접 수 인

신 청 일 2000.00.00.

사 건 명 〇〇〇

신 청 인 〇〇〇(주민등록번호)

ㅇㅇ시ㅇㅇ구ㅇㅇ로ㅇㅇ(우편번호ㅇㅇㅇ-ㅇㅇㅇ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신청인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ㅇㅇ시ㅇㅇ구ㅇㅇ로ㅇㅇ(우편번호ㅇㅇㅇ-ㅇㅇ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20 . .

조정기일소환장 통

위 서류를 영수함

20 ○ ○ . ○ . 신청인 ○ ○ ○ (서명 또 는 날인)

조정신청사항가액 금 ㅇㅇㅇ원 수 료 금 ㅇㅇㅇ원 송 달 료 금 ㅇㅇㅇ원

(인지첩부란)

신 청 취 지

- 1.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.
- 2. 조정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.

신 청 원 인

2.

1.

3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ㅇㅇㅇㅇ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○통

1. 신청서부본 ○통

1. 송달료납부서 ○통

2000. 00. 00. 위 신청인 000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제출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 멸 시 효 기 간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 법규 민사조정				민사조정법	
불복절차 및 기간						
비 용	・조정수수료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		
기 타	·민사조정법 제30조,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,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,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음(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2000다 33690 판결).					

※ (1)관할법원(민사조정법 제3조)

- 가. 조정사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, 지방법원 지원,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관할로 함.
 - 1.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소재지
 - 2.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
 - 3. 피신청인의 근무지
 - 4.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
 - 5. 손해발생지
- 나. 조정사건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법원의 관할로 할 수 있음.
- 다.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법원 등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.